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성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7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6.

발 의 자 : 김성회 · 양부남 · 문진석
박 정 · 손 술 · 이기현
김한규 · 황정아 · 모경종
장철민 · 조승래 · 전종덕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등을 들고 있음.

그런데,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‘자살예방 및 구조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’, ‘재난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책무’를 규정하고 있음에도,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이를 명시하지 않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재난·안전사고의 예방 등과 그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추가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갖추고, 주민의 생명·재산 등의 보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(안 제13조제2항제2호·제6호).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복지증진”을 “복지증진 및 생명 존중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화재예방·경계”를 “경계”로 하며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

주민의 안전과 신체·재산의 보호

다. 재난 및 안전 사고 예방과 그에 따른 권리의 보장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(생 략)	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주민의 <u>복지증진</u>	2. ----- <u>복지증진 및 생명 존중</u>
가. ~ 차. (생 략)	가. ~ 차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카. <u>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</u>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6. <u>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</u>	6. <u>주민의 안전과 신체·재산의 보호</u>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지역의 <u>화재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</u>	나. ----- <u>경계</u> ----- -----
<신 설>	다. <u>재난 및 안전 사고 예방과 그에 따른 권리의 보장</u>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